

2026

공정거래 자율준수편람 (공정거래법)



임직원에 대한 공정거래 관련업무 지원을 위해 배포한 공정거래자율준수 편람 책자 및 전자파일(PDF)을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게시하오니 많은 활용 바랍니다.

• 공정거래자율준수편람 모바일 접속경로

» 모바일 그룹웨어 → 게시 → 공지사항 → 공정거래 자율준수 편람

• 공정거래자율준수편람 PC 접속경로

» EP시스템 → 공지사항 → '공정거래 자율준수 편람' 검색

게시		↻	+
전사공지	업무가이드	현장소통	경조사
📢	'26년 상반기 WIDE:A Day 시행 안내	전은혜	26.01.29 15:26
N	'26년 4월 경영실적 안내	임요환	26.05.15 08:15
N	참고장 선임 안내(잭니클라우스)	장민지	26.05.15 07:58
	보직변경 안내(포항운영1,2그룹)	이후욱	26.05.12 16:37
	휴직 안내(용인하수, 김포하수)	장민지	26.05.08 12:35

1 2 3 >

최근게시물(총1건) 공정거래 자율준수 편람 상세검색 ▾

새로고침

≡ 제목 ▾

≡ 공정거래 자율준수 편람 안내

CONTENTS

I 공정거래법

관련부서 : 전 사업장/구매

1. 공동행위(담합의 개요)	
1) 담합이란	03
2) 규제 현황	03
3) 부당한 공동행위(담합)의 요건	04
4) 합의 추정 제도	04
2. 부당한 공동행위(담합)의 유형	
1) 가격을 결정, 유지 변경하는 행위	05
2) 상품의 생산, 출고, 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05
3) 거래 지역 및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06
4) 정보 교환 행위	06
5) 입찰 담합	13
6) 부당한 공동행위(담합) 시 제재	17
3. 내부거래 시 유의사항	
1) 부당한 내부거래 개요	19
2) 부당한 내부거래 금지	21
3)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금지	27
4) 업무 시 유의사항	33
4. Q&A	35

II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관련부서 : 전사

1.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개요	
1) CP의 정의	39
2) CP도입의 중요성 및 도입 요건	39
2. CP등급평가	
1) CP등급평가 정의 및 목적	41
2) CP등급평가 인센티브	41
3. 포스코와이드 CP 추진 경과	
1) CP추진 경과	42

※ 참고문헌

- 포스코, 공정거래준수 편람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 자율준수 편람

발행부서

포스코와이드 정도경영사무국

발행일

2026년 5월

I

공정거래법



01 공동행위(담합의 개요)

1. | 담합이란

2이상의 사업자간 계약, 협정, 결의 등의 방법으로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거래조건, 거래량, 거래상대방 또는 거래지역을 제한하는 행위로서, 부당한 공동행위를 카르텔(Cartel) 또는 담합이라고 한다.

※ 관련 조항

- ① 사업자는 계약·협정·결의 또는 그 밖의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2.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조건이나, 그 대금 또는 대가의 지급조건을 정하는 행위
 3. 상품의 생산·출고·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4.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5. 생산 또는 용역의 거래를 위한 설비의 신설 또는 증설이나 장비의 도입을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6.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거래 시에 그 상품 또는 용역의 종류·규격을 제한하는 행위
 7. 영업의 주요 부문을 공동으로 수행·관리하거나 수행·관리하기 위한 회사 등을 설립하는 행위
 8. 입찰 또는 경매를 할 때 낙찰자, 경락자, 입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입찰담합)
 9. 그 밖의 행위로서 다른 사업자(그 행위를 한 사업자를 포함한다)의 사업활동 또는 사업내용을 방해·제한하거나 **가격, 생산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주고받음으로써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 (정보교환 합의)**

2. | 규제 현황

담합은 '공모'로 인한 경쟁제한성이 가장 심하며, 가장 큰 피해를 소비자에게 직접 유발하므로, 공정거래위원회는 **카르텔 근절에 공정거래 관련 법규 집행의 제 1순위를 부여**

01 공동행위(담합의 개요)

3. | 부당한 공동행위(담합)의 요건

→ 사업자간 공동행위에 대한 합의의 존재

- 계약, 협정 등과 같은 명시적인 합의뿐만 아니라 사업자간의 양해와 같은 묵시적인 합의까지도 포함 "Knowing wink can mean more than words"(이해한다는 눈짓만으로도 합의가 인정될 수 있음) 특히, 법원은 합의의 의미를 폭넓게 해석
- 합의가 존재하는 이상 그 합의내용에 따른 실행행위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카르텔이 성립

[연락의 입증방법]

우선, '의사의 연락'을 증명하는 직접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으로는 사업자의 종업원 등이 카르텔 입찰 담합을 행하고 있었음을 인정한 진술 조서 외에, 카르텔 입찰 담합의 참가자 간에 작성된 협정서 및 회합 회의록 등이 있다.

→ '경쟁제한성'이 존재

- 경쟁제한성이란 사업자가 공동으로 어떠한 행위를 함으로서 시장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공동 행위 참여자의 의사에 따라 가격, 수량, 품질, 기타 거래조건 결정 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8도6341 판결).
- ① 사업자간 합의가 모두 금지되는 것은 아니며,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합의가 금지의 대상
- ② 가격담합, 입찰담합은 합의의 존재만 입증되면 추가적인 경쟁제한성에 대한 입증·분석 없이 곧바로 위법성이 인정된다.

4. | 합의 추정 제도

- 명시적 합의와 같은 명백하고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에도 제반 사정에 비추어 카르텔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상당한 정황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합의를 추정하여 제재할 수 있다.
- ① 합의추정을 적용한 사건도 이후 자진신고, 재조사 과정 등을 통해 실제 합의사실이 사후적으로 확인되는 사례들도 발생하고 있다.
- 법 제40조 제5항에 의하여 합의가 추정되는 경우, 사업자는 그 행위가 합의에 기한 것이 아님을 입증함으로써 추정을 복멸할 수 있다.

02 부당한 공동행위(담합)의 유형

1. | 가격을 결정, 유지 변경하는 행위

→ 판단 기준

- 법 제40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가격을 결정, 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라 함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결정, 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가격'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대가, 즉 사업자가 거래의 상대방으로부터 반대급부로 받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가리키는 것으로, 당해 상품의 특성, 거래내용 및 방식 등에 비추어 거래의 상대방이 상품 또는 용역의 대가로서 사업자에게 현실적으로 지불하여야 하는 것이라면 그 명칭에 구애됨이 없이 당해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에 포함된다.

→ 법 위반 유형

- 공동으로 가격을 인상하거나, 인하율(폭)을 결정하거나, 일정수준으로 가격을 유지하는 행위
평균가격, 기준가격, 표준가격, 최고 및 최저가격, 금리협정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가격설정의 기준을 정하는 행위 (합성수지 건에서 대표규격 가격 → 나머지 규격은 대표규격에 연동)
- 할인율, 이윤율 등 가격의 구성요소에 대해 그 수준이나 한도를 정하거나 일률적인 원가 계산의 방법을 공동으로 결정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가격을 동일하게 결정, 유지, 변경하는 행위
- 과당경쟁금지, 정부고시가격 준수 등을 이유로 일정가격 이하로 응찰하지 않도록 합의하는 행위

2. | 상품의 생산, 출고, 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 판단 기준

- 법 제40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상품의 생산·출고·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라 함은 사업자 사이에 각 당사자의 생산량이나 판매량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거나 일정한 비율로 감축시키는 것을 말한다.

→ 법 위반 유형

-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에서 생산량, 판매량, 출고량, 거래량, 수송량 등을 일정한 수준 또는 비율로 제한할 것을 합의하거나 사업자별로 할당하는 행위
- 가동률, 가동시간, 원료구입 여부 또는 비율 등을 제한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생산, 출고, 수송을 제한하는 행위

02 부당한 공동행위(담합)의 유형

3. | 거래지역 및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 판단 기준

- 법 제40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는 부당한 공동행위의 유형 중 시장분할(market allocation)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동행위 참가 사업자간에 거래지역을 공동으로 정하여 상호간에 침범하지 않도록 하는 행위, 특정한 사업자와는 거래하지 않도록 하거나 또는 특정한 사업자와만 거래하도록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공동행위 참가 사업자들의 개별 수주활동을 제한하고 공동 수주하도록 하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한다.

→ 법 위반 유형

- 공동으로 수주하도록 합의하거나, 입찰 또는 수주의 순위, 자격 등을 합의하는 행위
- 공동행위 참가사업자간에 거래처 또는 거래지역을 제한하거나, 거래처 또는 거래지역을 공동으로 정하여 상호간에 침범하지 않도록 하는 행위
- 특정한 사업자와는 거래하지 않도록 하거나 특정 사업자와만 거래하도록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 없이 특정한 사업자를 우량업자 또는 불량업자로 구분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4. | 정보 교환 행위

[업무상 유의사항]

- 정보교환 합의는 크게 "시장"에 관한 정보와 "경쟁상 민감한 정보"를 교환하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는 경우 성립하며, 의사의 합치는 묵시적 또는 암묵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음.
- 경쟁상 민감한 정보(이를 "경쟁의 요소"라고 함)란 가격정보, 향후 생산계획 등을 말하며, 이에 관해 교환하기로 하는 의사연락만 있어도 '정보교환 합의'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02 부당한 공동행위(담합)의 유형

→ 개념

-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 제9호는 '가격, 생산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주고받음으로써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부당공동행위 유형으로 보고 있다. 예를 들어 경쟁사업자 간에 시기적으로 임박한 상세한 가격인상 계획을 교환하고 실제로 그 교환된 정보에 부합하는 가격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등을 말한다.
- 또한 유통업자, 사업자단체, 시장조사기관, 언론 등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정보교환도 문제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의 유형

1. 원가
 2. 출고량, 재고량 또는 판매량
 3. 거래조건 또는 대금/대가의 지급조건
- 기업이 타 경쟁사의 정보를 수집해 자사의 경영에 활용하는 것은 사업활동으로서 자연스러운 행위이지만, 이른바 기밀정보 또는 민감정보(가격, 생산량, 비용 등)의 수집 및 교환(이하 '정보교환'이라고 함)에 대해서는 그 내용이나 양태에 따라 경쟁법 위반의 리스크가 존재한다.
 - '정보교환' 행위는 '사업자가 직·간접적으로 다른 사업자에게 가격, 생산량 등의 정보를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 정보를 일간지 등 불특정다수가 자유로이 접근할 수 있는 매체에 공개·공표하는 행위는 위법한 정보교환에 해당하지 않지만, 공개·공표 전에 은밀한 정보교환이 선행된 경우에는 법위반이 될 수 있다.
 - 따라서 공개된 공유정보라고 해도 해당 정보교환에 의해 해당 정보를 입수하기 쉬워졌는지 여부, 다른 공유정보가 아닌 정보와 조합했는지 여부의 사항의 평가에 따라서 공유정보라도 기밀정보에 해당하고, 해당 정보교환이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수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 또한 정보는 역사적 정보, 최근의 정보 및 장래의 정보로 구분하는데 역사적 정보를 제외하고 1년 미만의 현재의 정보나 장래의 정보, 특히 기밀 정보에 관한 정보를 교환했을 경우, 경쟁 타사가 해당 시장에서 채택할 시장 전략의 예측이 용이하게 됨에 따라,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가 강하다고 할 수 있다.

02 부당한 공동행위(담합)의 유형

➔ 요건

(1) "정보"의 의미

- 정보의 의미'를 살펴보면 좁게는 담합을 촉진하거나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정보로서 가격 인상계획안, 인상내역, 월별매출목표, 매출실적, 목표달성도, 판촉내용, 영업전략 정보 등이 해당되며, 넓게는 기업의 기밀에 속하고, 경쟁의 핵심적 요소인 민감정보에 해당하는 원가 등 가격정보, 생산량 등 생산 능력, 거래조건 등을 말한다.
- 판례는 '정보'의 의미를 담합을 촉진하거나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정보를 말하며, 예시로 라면 회사들의 가격인상 계획 및 인상 내역, 유제품 사업자들의 시유 및 발효유 제품별 가격 인상안, 음료회사들의 월별매출목표, 매출실적, 목표달성도, 판촉내용, 신제품의 가격, 영업전략정보, 가격 인상안을 들고 있다.
- 공정거래법은 가격, 생산량, 원가 등 가격정보, 생산량 등 생산능력, 거래조건 등을 정보의 예시로 들고 있다.

(2) 교환(주고받음으로써)

- 사업자 간 정보를 '주고받는'(이하 "정보교환"이라 한다) 행위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가격, 생산량, 원가 등의 경쟁상 민감한 정보를 알리는 행위를 의미한다. 우편, 전자우편(이메일), 전화 통화, 회의 등 알리는 수단은 불문한다.
-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 제9호는 "사업자 간 정보를 '주고받는' 것을 합의하는 것이 경쟁을 제한하는 경우 그 합의를 금지"하고 있으며, 동법 제40조 제5항 제2호는 "사업자 간 정보를 '주고받았음' 을 근거로 부당한 공동행위의 합의를 추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사업자단체(협회, 협동조합 등), 제3의 사업자 등 중간 매개자를 거쳐 간접적으로 알리는 행위도 포함한다(기업이 제3자 기관에 정보를 제공하고 해당 제3자 기관은 정보를 집약하고 축적하여 기업에 사전에 합의한 형식과 빈도로 정보를 전달하는 행위).
- ① 구성사업자들이 사업자단체에게 재고량, 판매량 정보를 제공하고, 사업자단체가 각 구성사업자별 재고량, 판매량을 문서로 정리하여 전체 사업자들에게 송부한 경우 정보교환이 이뤄진 것으로 봄
- ② 간접적으로 알리는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 사업자의 정보가 중간 매개자를 거쳐 다른 경쟁사업자에게 전달되어야 하며, 사업자단체 등 중간 매개자에게 일방적으로 정보가 전달되기만 하는 경우는 정보교환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지 아니함.

02 부당한 공동행위(담합)의 유형

- 다만 사업자가 불특정 다수에게 위 정보들을 공개적으로 공표 또는 공개하는 행위는 정보교환 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 공개적으로 공표 또는 공개한다 함은 불특정 다수가 별도의 비용부담 없이 자유로이 접근 할 수 있는 매체(일간지, 전문지, 무료로 접근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 등)에 공표 또는 공개하는 것 주의할 것은 사업자간 비공개적으로 정보교환 행위를 한 후 그 정보를 사후적으로 공개적으로 공표 또는 공개하였다고 하여 선행된 비공개적인 정보교환행위까지 규율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3)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

- 일정한 거래분야의 경쟁이 감소하여 특정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의사에 따라 어느 정도 자유로이 가격, 수량, 품질, 그밖의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정보교환의 합의

- 명시적 합의뿐만 아니라 묵시적 합의도 포함되며, 합의는 둘 이상 사업자간 의사의 연락을 본질로 한다.
- 단순 외형 일치(정보교환의 존재)를 즉시 합의로 인정할 수는 없으며,
 - ① 의사연결의 상호성,
 - ② 정보교환이 합의에 의한 것인지가 추가적으로 입증되어야 한다(판례).

다만, 정보교환 자체를 규제하는 개정 공정거래법에서도 그대로 적용될지는 논란이 있으며, 법원이 '민감한 정보의 교환을 정보교환 담합 합의 추정'과 같은 사실상의 추정 등을 인정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정보교환이 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뤄진 경우]

- 경쟁사가 보내온 가격 정보 관련 메일을 수신하자마자 더 이상 관련 메일을 보내지 말 것을 강력히 요청하였고 실제로도 이후 그러한 메일이 오지 아니한 경우
- 사업자단체의 판매량 정보 제공 요청에 대해 타 구성 사업자에게는 공유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정보 제공에 응하였으나 사업자단체가 해당사업자의 의사에 반해 판매량 정보를 타 구성 사업자들에게 공유하는 한편 타 사업자들의 정보를 임의로 해당 사업자에게 송부한 경우

02 부당한 공동행위(담합)의 유형

➔ 정보교환을 근거로 합의 추정

(1) 합의 추정의 의미와 요건

- 정보교환을 이유로 가격담합 등의 합의가 있었음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 ① 2이상의 사업자가 부당한 공동행위를 함으로써 가격 등이 유사 또는 동일 해지는 '행위의 외형상 일치'가 있어야 하고,
 - ② 외형상 일치 창출에 필요한 정보의 교환이 있어야 한다(공정거래법 제40조 제5항 제2호).
- '합의추정'의 2가지 요건을 충족할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합의가 존재한다고 인정되므로, 사업자는 외형상 일치가 성립하지 않았음을 입증하거나, 설령 외형상 일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합의에 의한 것이 아니거나 그 일치와 교환된 정보 간에 아무런 관계가 없음을, 즉 '필요한 정보'의 교환이 없었음을 입증함으로써 합의의 추정을 깨뜨릴 수 있다

[합의 추정을 깨뜨릴 수 있는 사례]

-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적 요인(금리, 환율, 원자재 가격 등)의 변동에 대해 사업자들이 내부 프로세스를 거쳐 '각자' 대응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외형상 일치가 나타난 경우
- 다른 업체의 가격 인상 등을 단순 추정하는 과정(의식적 병행행위)에서 외형상 일치가 나타난 경우
- 행정지도(구두 등 유형 불문)에 '각자' 따른 결과 외형상 일치가 나타난 경우

(2) 외형상 일치 판단 기준

- 사업자 간 행위의 외형상 일치가 있는지 여부는 다음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 ① 가격 등의 변동률, 변동시점 : 가격 등 경쟁변수의 변동률, 변동폭, 변동시점 등이 동일 또는 유사한 경우 외형상 일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 ② 구매대체의 정도 : 가격 등 경쟁변수의 변동률, 변동폭 등에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그로 인한 소비자의 상품 또는 용역들 간 구매대체의 정도가 미미한 경우에는 외형상 일치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③ 입증하려는 합의의 내용 : 입증하려는 합의의 내용이 다소 느슨한 형태의 합의
(예 : 가격을 특정 수준으로 인상하는 합의가 아닌, 가격을 인상하자는 등의 방향만 공동으로 결정하는 합의)라면 가격 등 경쟁변수의 변동률 등에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외형상 일치가 있다고 본다.

02 부당한 공동행위(담합)의 유형

[외형상 일치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예시]

- 경쟁사별 상품 가격의 인상폭이 원 단위까지 동일한 경우
- 10개 보손해보험사들이 종래 무료로 제공하던 긴급출동 서비스 중 긴급견인, 비상급유 서비스를 4개월에 걸쳐 배터리 충전, 타이어교체, 잠금장치 해제 서비스를 6개월에 걸쳐 순차적으로 유료화 하는 방식으로 거래조건을 변경한 경우

(3) 필요한 정보의 교환 여부 판단 기준

- 교환된 정보가 외형상 일치 창출에 '필요한 정보'인지 여부는 다음의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 ① 정보의 종류 및 성격 : 가격, 생산량 등 교환되면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높은 정보가 교환된 경우 '필요한 정보'의 교환에 해당될 가능성이 큰 반면, 인사동정, 소비자 성향 분석자료 등 경쟁에 큰 경향을 미치지 않는 정보가 교환된 경우에는 '필요한 정보'의 교환에 해당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 ② 정보가 교환된 시점 : 사업자의 의사결정 시점에 임박해 정보가 교환된 경우 해당 정보의 교환은 '필요한 정보'의 교환에 해당될 가능성이 크다.
 - ③ 외형상 일치의 내용과 교환된 정보의 내용 간의 관계
: 교환된 정보의 내용과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으로 가격 등 경쟁 변수에 외형상 일치가 나타난 경우에는 '필요한 정보'에 해당될 가능성이 크다.

[필요한 정보교환으로 볼 수 있는 사례]

- 가격, 생산량, 원가, 판매·재고·출고량, 거래조건, 지급조건 등 경쟁상 민감한 정보로서 미래정보, 비공개 정보, 개별 사업자 경쟁변수가 특정되는 정보가 경쟁사업자 간에만 배타적으로 교환되는 경우
- 가격인상 결정 시점에 임박하여 인상일자, 인상계획 내역 등의 교환이 이루어진 경우
- 가격인상계획 관련 정보가 상호 교환이 되었고, 각 회사들이 제시한 가격인상안에 준하는 수준의 가격인상이 실제로 있었던 경우

[필요한 정보교환으로 볼 수 없는 사례]

- 경쟁변수가 아닌 일상적 정보(인사동정, 소비자 성향 분석 자료, 최신 상품 트렌드 분석 자료 등), 단순 경영목표치(목표 성장률, 목표 매출액 등)의 교환이 이뤄진 경우
- 외형일치가 나타난 경쟁변수와 교환된 경쟁변수 정보간 상관관계가 약한 경우 (예를 들어, 가격의 외 형상 일치가 있었는데, 실제로 교환된 정보는 대금지급 정보인 경우)

02 부당한 공동행위(담합)의 유형

(4) 업무상 유의사항

[Do's]

- 경쟁사의 가격이나 거래조건, 생산량, 마케팅 전략 등이 언급되는 문서를 작성할 때에는 출처를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기록해 놓아야 함).
- 내부보고 생성시 담합으로 오해 받을 수 있는 표현이나 문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컴플라이언스팀과 사전에 공유하도록 한다.
- 경쟁사 임직원과 불가피하게 접촉한 경우 접촉경위나 모임의 성격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 가격이나 공급량의 결정이 독자적인 분석과 이에 기초한 경영판단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을 보여줄 수 있는 분석자료와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내부자료를 축적 보관하여야 한다.

[Don't:s]

- 기업의 비밀에 속하고 경쟁의 핵심요소인 가격인상 계획이나 인상내역 같은 민감한 정보는 경쟁사와 교환해서는 아니 된다(가격, 판매조건, 이익률, 판매량, 시장점유율, 판매구역 뿐만 아니라 매출, 영업지원책, 홍보 및 판촉 계획, 신제품 출시 계획 등이 모두 경쟁핵심 요소에 포함).
- 전자우편, 즉 이메일의 쌍방향적 성격을 감안하여 경쟁사 임직원과는 가급적 이메일을 교환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며, 불가피하게 교환하여야 한다면 내용에 민감한 문구나 과장된 표현은 사용하지 않는다.

02 부당한 공동행위(담합)의 유형

5. | 입찰 담합

→ 개념

- 입찰담합은 둘 이상의 사업자가 계약, 협정, 결의 어떠한 방법으로 입찰시 낙찰자, 투찰가격, 낙찰의 비율, 설계 또는 시공의 방법등을 합의하는 것을 말한다.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 제8호)
- 입찰 담합은 공공 및 민수 입찰에 있어서, 입찰 참가자가 사전에 수주 예정자나 최저 입찰 가격 등을 결정함으로써, 발주되는 상품이나 서비스 등의 거래에 관계된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입찰 제도의 실질을 잃게 하는 것과 동시에, 경쟁 제한 행위를 금지하는 공정거래법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이다.

→ 입찰 담합의 방법

- 낙찰예정자를 결정하는 회의를 개최해 수주 예정자를 결정
- 점수제나 순서제에 의해 낙찰예정자를 결정
- 지명업자간의 화합의 모임을 통해 지명업자로부터 수주 희망의 유무를 듣고 토론 등으로 원만하게 낙찰예정자로 결정
- 발주처 직원으로부터 낙찰예정자가 된 취지의 연락을 받은 업자를 낙찰예정자로 확정.
- 합의된 낙찰예정사가 견적을 작성하여 둘러리사에게 이메일 등을 통해 전달하면 둘러리사는 수령한 견적가격을 그대로 또는 상향 조정하여 투찰

→ 입찰 담합의 유형

아래 유형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입찰 담합의 유형을 예시적으로 열거한 것일 뿐 입찰 담합이 우려되는 활동에 대해서는 개별 사안별로 판단이 필요하다.

(1) 입찰가격 담합

- 공동으로 최저입찰가격(계약목적에 따라서는 최고입찰가격), 수주예정가격 또는 그와 비슷한 것으로 인정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은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원칙적으로 위반 된다.
- 가격은 본래 사업자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서 형성되어야 하며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가격결정에 관한 활동을 하는 것은 공정거래법상 문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여기에서의 결정은 명시적 결정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최저입찰가격 등에 관해 암묵적인 이해 또는 공통인 의사가 형성되는 것으로 충분하다.
- 타당한 가격 수준을 위한 것이라든지, 대상이 되는 제조위탁의 질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든지, 부당한 저가 수주를 방지하기 위한 이유로 정당화되지 않는다.

02 부당한 공동행위(담합)의 유형

① 원칙적으로 위반이 되는 것

- ✓ 사업자가 공동으로(합의하여) 낙찰가격 또는 투찰 가격을 결정하는 것

② 가구제조업분야의 입찰가격 담합 사례

- ✓ (입찰가격 등 합의) 명시적인 낙찰예정자 결정 없이 수주를 원하는 업체가 다른 경쟁업체에게 고가투찰을 요청하면서 견적서를 제공하거나 입찰참가자격 유지를 희망하는 업체가 낙찰확률이 높은 업체에게 견적서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합의

(2) 낙찰예정자의 사전결정(수주자예정자 선정에 관한 행위)

- 사업자가 공동으로 낙찰예정자 또는 낙찰예정자의 선정방법을 결정하는 것은 입찰제도의 취지에 반하고 상품 및 용역거래에 관한 경쟁을 본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위반이 된다. 여기에서의 결정은 명시적인 결정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수주 예정자 또는 수주 예정자의 선정 방법에 관해 **암묵적인 이해 또는 공통 의사가 형성되는 것으로 충분하다.**

① 원칙적으로 위반이 되는 것

- ✓ 사업자가 공동으로 입찰 관련 수주 예정자 또는 수주 예정자의 선정 방법을 결정하는 것.

(a) 수주 예정자를 결정하기 위한 수단

: 다음과 같은 행위는 수주 예정자를 결정하기 위한 수단이 되는 것이며, 수주 예정자에 관한 암묵적인 이해 및 공통의 의사의 형성으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위반의 우려가 강함.

㉠ 수주 의욕의 정보교환 등

: 입찰에 참가하려는 사업자가 당해 입찰에 대해 가지고 있는 수주 의욕, 사업활동 실적, 대상물건 등에 관련한 수주실적 등 수주 예정자의 선정과 관련된 정보에 대하여 사업자들 간에 정보를 교환하는 것

㉡ 지명회수, 수주실적 등에 관한 정보의 정리·제공

: 사업자가 공동으로 과거 입찰에 있어서 개별 사업자의 지명회수, 수주실적 등에 관한 정보를 이후의 수주예정자 선정의 우선순위 기준으로 하는 것 같은 형식으로 정리하여 입찰에 참가 하는 자에 게 제공하는 것

(b) 수주 예정자 또는 수주 예정자의 선정방법의 결정

: 수주 예정자로부터 입찰가격에 관한 연락, 지시 등을 받은 상태에서 수주 예정자가 수주 받을 수 있도록 각각의 입찰가격을 설정하는 것

(c) 기타

: 다음과 같은 행위는 수주 예정자 또는 수주 예정자의 선정방법의 결정 전제로 하여 그 결정을 용이하게 하거나 또는 강화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것인바, 수주 예정자 또는 수주 예정자의 선정방법을 결정하는 이러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위반이다.

02 부당한 공동행위(담합)의 유형

㉠ 다른 입찰참가자에 대한 이익공여

: 사업자가 공동으로 수주 예정자에게 다른 입찰 참가자들에게 업무발주, 금전지급 등의 이익을 제공하도록 시키는 것

: 지명경쟁입찰에 의해 발주하는 제조위탁에 대해서, 수주 예정자를 결정하는 동시에, 수주 예정자의 결정을 쉽게 하기 위해서 필요에 따라 제조위탁을 받은받은 자가 수주를 희망하고 있었던 수주 예정자 이외의 사업자 또는 일정 기간 수주의 실적 없는 사업자에게 제조위탁의 일부를 제조시키고 있었던 경우

: 지명경쟁입찰 또는 지명견적으로 발주하는 제조위탁에 대해서, 수주 예정자 및 수주 예정 가격을 결정하는 동시에, 해당 지명경쟁입찰의 참가자 이익을 거의 균등화시키기 위해서, 수주 예정자가 수주 예정자 이외의 자에 대하여 이익의 배분 방법 및 배분액수를 결정하고 있었던 경우

㉡ 수주 예정자 결정에 대한 참가의 요청, 강요 등

: 사업자가 공동으로 입찰참가를 예정하는 사업자에 대해 수주 예정자의 결정에 참가할 것 또는 결정의 내용에 따를 것을 요청, 강요하고 결정에 참가, 협력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 거래거절, 사업자간 차별적인 취급 등으로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결정의 내용에 따르지 않고 입찰한 사업자에 대해 거래거절, 사업자간 차별적 취급, 금전지급 등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함.

② 위반이 될 우려가 있는 것

✓ 입찰 참여 사업자간에 각 사업자에 대해 지명경쟁입찰에 관한 지명을 받은 것과 입찰 참가의 예정에 대해 보고를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a) 공동기업체(컨소시엄)에 관한 정보교환

: 공동기업체로 입찰에 참가하려는 사업자가 다른 공동사업체로 당해 입찰에 참가하려고 하는 사업자간에 당해 입찰참가를 위해 공동기업체의 결성에 관한 정보를 교환을 하는 것을 말함. 이러한 정보교환은, 수주 예정자 결정을 위한 정보교환으로 발전하는 것으로 수주 예정자의 결정으로 연결되는 것으로서 문제가 됨.

③ 원칙적으로 위반이 되지 않는 것

✓ 발주자에 대한 입찰참가 의욕 등의 설명

: 사업자가 지명경쟁입찰에서, 지명 이전의 단계에서 제도상 정해진 발주자로부터의 요청에 따라, 다른 사업자체와 연락·조정 등이 없이, 자기의 입찰 참가에의 의욕, 기술 정보(유사업무의 실적, 기술자의 내용, 해당발주 업무의 수행 계획 등)등을 발주자에 대하여 설명하는 것을 말함.

(a) 자기 판단에 의한 입찰 사퇴

: 지명경쟁입찰에서 지명을 받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연락·조정 등을 하거나 그것들로부터 요청 등을 받을 일 없이 자기의 사업경영상의 판단에 의해 입찰을 사퇴하는 것을 말함

02 부당한 공동행위(담합)의 유형

④ 가구제조업 분야의 낙찰예정자 담합 사례

- ✓ 내장형(빌트인) 특판가구 입찰담합에서 낙찰예정자 또는 낙찰순번은 주사위 굴리기, 제비뽑기, 선(先)영업 업체 우대(예: 견본주택 건립업체) 등 건설사별로 다양한 방식을 통해 결정

(3) 경쟁입찰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유도

- 사업자가 공동으로 특정사업자가 수의계약에 의해 계약할 수 있도록 결정·유도하는 것은 자유로운 경쟁을 배제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위반이 된다.

(4) 수주 물량 등의 결정

- 사업자가 공동으로 입찰에 관련된 수주물량결정과 이러한 수주물량을 나누어 갖기 위해 입찰 참가자간 배분 등을 결정하는 행위는 경쟁을 제한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위반이 된다.
여기에서의 결정은 명시적 결정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수주 수량, 비율 등에 관해 암묵적인 이해 또는 공통인 의사가 형성되는 것으로 충분하다.

(5) 경영간섭 등

- 입찰에 참가하려는 사업자가 공동으로 당해 입찰에 관련된 사업자 활동에 대해 지도를 행함에 있어서 입찰가격이나 수주예정자 결정에 영향을 주는 행위는 경쟁제한적인 행위로 원칙적으로 위반이 된다.

(6) 정보교환 등

- 정보교환행위란 가격, 생산량, 상품 또는 용역의 원가, 출고량, 재고량 또는 판매량, 상품/용역의 거래조건 또는 대금/대가의 지급조건에 대한 정보를 사업자 간에 주고받음으로써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말한다.

빌트인 특판가구 공급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로 정하고, 낙찰예정자가 들러리 참가자에게 자사의 준 투찰가격과 세부원가 등을 제공하여 입찰에 참여하도록 유인

02 부당한 공동행위(담합)의 유형

➔ 입찰담합 시 제재

(1) 시정조치

- 사업자가 공동으로 입찰담합행위를 한 경우, 당해 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공정거래법 제42조).
- 필요한 조치로는 입찰담합과 관련한 협정의 파기, 협정을 파기한 사실의 주지철저, 앞으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하는 것의 금지, 범위반사실의 공표 등을 말함..

(2) 과징금

- 관련매출액의 20%(매출액이 없을 경우 40억원) 범위 내에서 부과 가능하다(공정거래법 제43조). 입찰담합에 있어 관련매출액은 ①낙찰된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②낙찰은 되었으나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낙찰금액을, ③낙찰되지 않은 경우에는 예정금액(또는 응찰금액)

(3) 벌칙

- 공정위의 고발에 의해 입찰담합행위를 한 자 또는 이를 행하도록 한 자 등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공정거래법 제124조, 징역과 벌금은 병과 가능).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 개인에 대하여서도 처벌이 가능하다.
- 기타 형벌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형사처벌(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형법에 의한 2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

6. | 부당한 공동행위(담합) 시 제재

➔ 행정적 제재

- 공정위는 위반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기타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 또한, 관련매출액(입찰담합의 경우 계약금액을 매출액으로 봄)의 20% 한도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관련 매출액 산정이 어려울 경우에는 정액과징금 **40억원을 부과할 수 있다.**

➔ 형사적 제재

-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공정거래법 제66조 제1항)
- 양벌규정(공정거래법 제70조)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행위자 외에도 법인 또는 개인도 처벌 가능. 다만,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면책될 수 있다.

02 부당한 공동행위(담합)의 유형

➔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 공동행위로 인해 손해(공동행위로 설정한 가격과 경쟁시 형성되었을 정상가격과의 차이)를 입은 제3자나 소비자는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공정거래법 제56조)

[손해배상소송시 자료제출명령제(공정거래법 제111조)]

-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법원은 “**자료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음(공정거래법 제111조 제4항)
- 법원은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제출명령에 따르지 않고, 자료의 제출을 신청한 당사자가 자료의 기재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고, 자료로 증명할 사실을 다른 증거로 증명하는 것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경우 법원은 “**그 당사자가 자료의 기재로 증명하려는 사실에 관한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음(공정거래법 제111조 제5항)

[업무상 유의사항]

- 제출대상이 '문서'에서 '자료'로 확대됨에 따라 피해자가 전자문서, 동영상, 사진, 도면 기타 전자적 형태의 자료도 확보할 수 있게 됨
 - 기업 입장에서는 서버 등에 저장된 다양한 자료(영업비밀 포함)의 유출가능성에 대비할 필요 있음.
- 제출명령 불응 시 자료의 기재에 의하여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게 되는 등 자료제출명령의 실효성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 피해자의 증거수집이 보다 용이해짐에 따라 손해배상청구소송이 활발해질 가능성이 있고, 종전보다 손해배상액도 확대될 가능성 있음

03 내부거래 시 유의사항

1. | 부당한 내부거래 개요

- 공정거래법은 공시대상 기업집단(자산총액 5조원 이상)뿐만 아니라,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부당한 지원행위를 규제하고 있으며, 특히, 대기업집단의 총수 일가의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등을 규제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다.
- 종래 계열사간 내부거래에 대해서는 부당지원행위(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9호) 규정이 적용되었으나, 부당지원행위의 성립요건인 부당성(공정거래저해성)에 대한 입증의 어려움, 통행세 관행 등 새로운 유형의 부당 내부거래 및 거래가 없는 사업기회 유용 등의 규제 필요성, 실제 지원을 본 지원객체에 대한 규제 필요성에 의해 공정거래법 개정(2013. 8. 13.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신설, 2014. 2. 14. 시행)으로 공시대상 기업집단(당사)의 내부거래에 대해서는 부당지원행위(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9호)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공정거래법 제47조)가 동시에 적용된다.

[부당지원행위 vs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비교표]

구분	부당지원행위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
규제목적	공정거래저해성(특히 경쟁제한성)이 있는 부당지원행위 금지	대기업집단 특수관계인(총수일가)의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금지
조항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9호	공정거래법 제47조
지원주체	모든 회사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인 기업집단)
지원객체	1. 특수관계인 2. 계열회사 (공정위 실무상 해외 계열사는 제외) 3. 자회사 (지분을 100%의 완전자회사도 포함)	1. 특수관계인 2. 특수관계인이 20% 이상 지분 (상장여부와 무관)을 보유한 계열회사 3. 특수관계인이 20%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자회사 (50% 초과 지분 보유)

03 내부거래 시 유의사항

구분	부당지원행위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
구성 요건	지원행위+부당성(공정거래저해성) (부당성에 대한 안전지대 규정 존재)	행위당사자+부당이익제공
규제내용	1.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2. 통행세(불필요한 거래단계의 추가) ->사업포기의 경우 규제 어려움 3. 물량(일감) 몰아주기: 상당한 규모의 거래+정상가격에 비해 유리한 조건 ->예외사유에 대한 명시적 규정 없음	1. 상당히 유리한 조건 (안전지대 규정 존재) 2. 통행세(불필요한 거래단계 추가) 3. 사업기회의 제공 ->사업포기도 규제 가능 4. 물량(일감) 몰아주기: 상당한 규모의 거래+정당한 거래절차 부재 (안전지대 규정) ->정상가격과 차이가 없거나 입증 곤란한 경우에도 규제 가능하며, 예외사유(효율성, 보안성, 긴급성)관련 명시적 규정 존재
위반시 제재	1) 지원주체 - 시정조치 : 부당지원행위의 중지 등 재발방지 등의 필요한 조치 - 과징금 부과: 직전 3개 사업년도 평균매출액의 10%(지원금액x부과기준율) 이내 또는 매출액이 없는 경우 40억 원 이내 과징금 부과 √ 지원금액: 정상가격과 실제 거래금액의 차액 √ 부과기준율: 위반행위 중대성에 따라 80%, 50%, 20% 부과기준율 적용 - 실행행위를 한 자, 지시한 자, 관여자에 대한 형사적 제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 2) 지원객체 -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지원주체와 동일) - 개인에 대한 형사적 제재의 경우, 부당지원행위는 제외되나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에 대한 지원 객체는 형사적 제재 대상	

03 내부거래 시 유의사항

2. | 부당한 내부거래 금지

➔ 개념

- 지원을 하는 회사가 지원을 받는 회사에 대하여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다른 사업자와 직접 상품·용역을 거래하면서 상당히 유리함에도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회사(특수관계인 등)를 매개로 거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9호)
-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는 부당한 지원행위의 경제적 급부의 가격이 지원받는 사업자로부터 받는 경제적 반대급부의 정상가격보다 높은 경우를 말하며, 판단의 기준이 되는 「정상가격」은 "지원하는 회사와 지원을 받는 회사간의 경제적 급부와 동일한 경제적 급부가 시기, 종류, 규모, 기간, 신용상태 등이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회사간에 이루어졌을 경우 형성되었을 거래가격"을 말한다.
- 특수관계가 없는자간 거래가격은 정상가격으로 추정하며, 특수관계자간 거래가격의 경우, 지원 의도가 엿보이는 정황증거가 있거나 제3자간 거래라면 나타나지 않을 협상 또는 거래방식이 있을 경우 지원을 한 회사가 정상가격임을 소명해야 한다.
- '불필요한 거래단계 추가행위'의 경우, 지원하는 회사가 직거래가 가능함에도 계열사를 매개로 거래하고 계열사는 일종의 수수료(일명 '통행세')를 받는 경우인데, 지원을 받는 계열사의 역할이 무엇이고, 직거래보다 비용면에서 효율적인 거래인지 판단하게 된다.

➔ 지원행위의 부당성 판단 기준

- 부당성: 공정한 거래 저해의 우려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판단한다.
 - √ 지원객체가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유력한 사업자의 지위를 형성·유지 또는 강화할 우려가 있는 경우
 - √ 해당 지원행위로 인하여 지원객체의 경쟁사업자가 배제될 우려가 있는 경우
 - √ 지원객체가 해당 지원행위 인해 경쟁사업자에 비하여 경쟁조건이 상당히 유리하게 되는 경우
 - √ 해당 지원행위로 인하여 지원객체의 퇴출이나 타사업자의 신규진입이 저해되는 경우
 - √ 관련법령을 면탈 또는 회피하는 등 불공정한 방법, 경쟁수단 또는 절차를 통해 지원행위가 이루어지고, 해당 지원행위로 인하여 지원객체가 직간접적으로 속한 시장에서 경쟁이 저해되거나 경제력 집중이 야기되는 경우
- 단순한 사업경영상의 필요 또는 거래상의 합리성 내지 필요성이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부당성이 부정되지 않음에 유의한다.
- (안전지대) 대규모로 거래하여 거래 총액 기준을 넘는 사업자이더라도 지원금액이 1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03 내부거래 시 유의사항

[지원금액의 상당성(정상가격과 지원금액의 차이)의 판단 기준]

- 지원금액의 상당성의 성립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고려할 사항
 - ✓ **당해 거래의 정상가격과 지원금액**(지원주체가 지원객체에게 제공하는 경제적 급부의 정상가격에서 그에 대한 대가로 지원객체로부터 받는 경제적 반대급부의 정상가격의 차감한 금액, 만일 부가가치세가 수반되는 거래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의 차이,
 - ✓ **지원금액의 정도**
- 정상가격과의 차이, 지원금액이 어느 정도 달해야 상당성이 충족되는지는 일의적으로 제시가 어렵고, 개별적으로 당해 거래에 관한 제반 구체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2009두11911)
- 법원 및 공정위는 정상가격 대비 유리한 조건의 상대적 비율이 20% 이상인 경우 현저성을 대체로 인정하고, 10~20% 사이에는 유동적임, 유의할 것은 상대적 비율이 10% 미만인 사례에는 공정위가 개입하지 않았음

➔ 유형 ① 자금지원행위

(1) 판단기준

- '정상금리' 를 기준으로 지원행위 여부 판단
 - ✓ 정상금리는 자금거래와 시기, 종류, 규모, 기간, 신용상태 등의 면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 사이에 자금거래가 이루어졌다면 적용될 금리를 말하며,
 - ✓ 정상금리 산정이 어렵고 정상금리가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예금은행 평균 당좌대출금리 (일반정상금리)를 하회하지 않을 것으로 보일 경우 일반정상금리를 말한다.
- (안전지대) 적용금리와 정상금리 차이가 7% 미만인면서 해당연도 자금거래 총액이 3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적용제외).
 - ✓ 해당 연도 자금거래 총액은 지원주체와 지원객체 간에 이루어진 **모든 자금거래 규모를 포함하여 계산**(유가증권 등 자산거래, 부동산 임대차, 상품·용역거래, 인력제공 등에 의한 지원행위의 거래총액) 판단에도 이를 준용

(2) 위반유형

- 계열회사에 대한 저리자금대여, 저리자금예치, 선급금 명목의 자금제공, 기업어음, 사채 저리인수, 후순위사채 매입, 전환사채인수 및 전환행위
- 대여금, 용역대금을 변제기 이후에 회수하지 않는 경우
- 출자행위성질을 갖는 신주인수행위를 하는 경우

03 내부거래 시 유의사항

➔ 유형 ② 자산(부동산, 유가증권, 무체재산권) 지원행위

(1) 판단기준

- 유가증권, 부동산, 무체재산권 등의 자산 거래시 비계열사와 거래시 정상가격(해당 거래와 시기, 종류, 규모, 기간 등이 동일한 상황에서의 가격)과 실제 거래가격 차이를 7% 미만으로 조정
- √ 해당 거래와 시기, 종류, 규모, 기간 등이 동일한 상황에서 비계열사 사이에 실제 거래한 사례가 있는 경우 그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함.
- √ 해당 거래와 동일한 실제사례를 찾을 수 없는 경우에는 ① 먼저 해당 거래와 비교하기에 적합한 유사한 사례를 선정하고, ② 그 사례와 해당 지원행위 사이에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래 조건 등의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살펴, ③ 그 차이가 있다면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과정을 거쳐 정상가격을 산정하도록 함
- √ 정상가격 기준으로 지원행위 여부를 판단하되, 정상가격(시가)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당해 자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참작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장(재산의 평가) 및 동법 시행령 제4장(재산의 평가)에서 정하는 방법을 준용할 수 있다(부당한 지원행위심사지침).
- (안전지대) 해당 거래의 실제 거래가격과 정상가격의 차이가 정상가격의 7% 미만, 거래당사자간 해당 연도 자산거래 총액이 3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적용제외).

(2) 위반유형

- 비상장 주식을 저가 매도한 경우
- 임차한 건물을 계열사에 저가로 전대한 경우
- 계열사로부터 임대료 수령을 지연한 경우
- 단돈 또는 계열회사와 공동개발 무체재산권을 계열회사에 양도하여 단독 특허 출원하도록 한 경우

➔ 유형 ③ 부동산 임차

(1) 판단기준

-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제공하거나, 정상임대료보다 상당히 낮은 임대료로 임대하거나 정상임차료보다 상당히 높은 임차료로 임차하는 행위를 통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은 지원행위에 해당한다.
- 또한 지원주체가 지원객체에게 부동산을 상당한 규모로 임대차하는 행위를 통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은 지원행위에 해당한다.
- (안전지대) 실제 임대료·임차료와 정상 임대료·임차료의 차이가 정상 임대료·임차료의 7% 미만이고, 거래당사자간 해당 연도 부동산 임대차거래 총액이 3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적용제외).

03 내부거래 시 유의사항

(2) 위반유형

- 지원객체에게 공장·매장·사무실을 무상 또는 낮은 임대료로 임대하는 경우 **[부동산 저가임대]**
- 임대료를 약정납부기한보다 지연하여 수령하면서 지연이자를 받지 않거나 적게 받는 경우 **[부동산 저가임대]**
- 지원객체로부터 부동산을 임차하면서 고가의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 **[부동산 고가임차]**
- 지원주체가 지원객체 소유 건물·시설을 이용하면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와 동일하게 이용료를 지불함에도 불구하고 임차보증금 또는 임차료를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부동산 고가임차]**

➔ 유형 ④ 상품 및 용역 지원행위

(1) 판단기준

- 자금거래나 자산거래에 비해 정상가격 산정이 어려우므로 유사한 조건의 비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감안하여 판단할 수 있다.
- **(안전지대)** 지원주체와 지원객체 사이에 거래된 상품·용역의 실제 거래가격과 정상가격의 차이가 정상가격의 7% 미만이고, 거래당사자간 해당 연도 상품·용역 거래총액이 10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적용제외).

(2) 위반유형

- 계열 증권사를 이용한 무보증사채 인수행위, 자회사에게만 특별판매 장려금을 지급하는 경우
- 원재료의 고가매입
- 대금결제방식을 기존에 비해 유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03 내부거래 시 유의사항

➔ 유형 ⑤ 인력지원행위

(1) 판단기준

- 근로제공 및 대가지급의 구분관계가 합리적이고 명확한 때는 당해 인력이 지원객체와 지원주체로부터 지급받는 일체의 급여, 수당 등에서 당해 인력의 지원주체에 대한 근로제공의 대가를 차감한 금액을 정상급여로 간주한다.
- 구분관계가 합리적이지 않거나 불명확한 때에는 지원객체와 지원주체로부터 지급받는 일체의 급여, 수당 등에서 지원객체와 지원주체의 당해 사업연도 매출액 총액 중 지원객체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의한 부담금액을 정상급여로 간주(매출규모에 따라 안분) 한다.
- (안전지대) 실제지급급여와 정상급여의 차이가 정상급여의 7% 미만이고, 거래당사자간 제공된 인력의 해당 연도 인건비 총액이 3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적용제외).

(2) 위반유형

- 업무지원을 위해 계열사 등에 인력을 제공한(파견 등) 후 파견인건비를 계열사에 부담시키지 않는 경우
- 인력파견계약을 체결하고 인력을 제공하면서 퇴직충담금 등 인건비의 전부 또는 일부 미회수 시
- 지원객체의 업무를 전적으로 수행하는 인력을 지원주체 회사의 고문 등으로 위촉하여 지원주체가 수당이나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 지원주체가 자신의 소속 인력을 지원객체에 전적·파견시키고 급여의 일부를 대신 부담하는 경우

➔ 유형 ⑥ 물량 몰아주기

(1) 개념

- 상품·용역을 상당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를 통하여 과도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판단 기준

- 거래대상의 특성상 지원객체에게 거래물량으로 인한 규모의 경제 등 비용절감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 비용 절감효과가 지원객체에게 과도하게 귀속되는지 여부
- 지원주체와 지원객체간 거래물량만으로 지원객체의 사업개시 또는 사업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물량을 초과할 정도의 거래규모가 확보되는 등 지원객체의 사업위험이 제거되는지 여부

03 내부거래 시 유의사항

- 정당화 사유 고려: 당해 거래 고유한 특성에 의하여 지원주체에게 비용절감, 품질개선 등 효율성 증대효과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등
- (안전지대) 거래당사자간 해당 연도 상품·용역거래 총액이 100억원 미만이고, 거래상대방의 평균 매출액의 100분의 12 미만인 경우에는 부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적용제외).

(3) 위반유형

- 자회사에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하거나 상당 규모로 제공으로써 자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상당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 '상당한 규모의 거래'는 과도한 경제상 이익 제공을 의미하며, 지원성 거래규모 및 급부와 반대 급부의 차이, 지원행위로 인한 경제상 이익, 지원기간, 지원횟수, 지원시기, 지원행위 당시 지원객체가 처한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

➔ 유형 ⑦ 통행세(거래단계를 추가하거나 거쳐서 거래)

(1) 개념

- 거래상 실질적 역할이 없는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를 매개로 하여 거래함으로써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위반유형

- 거래단계에 추가하거나 거쳐서 거래하는 유형(추가된 거래단계의 회사가 전혀 혹은 거의 역할을 하지 않는 경우)
- 다른 사업자와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상 역할이 없거나 미미한 특수 관계인이나 다른 회사를 거래단계에 추가하거나 거쳐서 거래하는 경우
- 과도한 대가를 지급하는 유형(추가된 거래단계의 회사가 어느 정도 역할은 하지만 그 대가를 과도하게 받는 경우)
- 다른 사업자와 직접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상 역할에 비해 과도한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

03 내부거래 시 유의사항

3. |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금지

➔ 개요

(1) 대상

-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회사는 특수관계인(동일인·총수 및 친족으로 한정), 동일이니 단독 또는 다른 특수관계인과 합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20% 이상(상장사와 비상장사 구분 없음)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국내계열회사** 또는 계열회사가 단독으로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한 **국내계열회사**와 거래하여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는 금지된다 (공정거래법 제47조).
- √ 의결권 유무는 무관하며 직접지분만 계산한다. 특히 동법 제45조와 달리 이익제공행위를 통하여 그 제공객체가 속한 시장에서 경쟁이 제한되거나 경제력이 집중되는 등으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을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 √ 지원주체·지원객체 판단은 해당 이익 제공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 특수관계인 지분율은 직접 지분만 포함하여 산정하며, 차명보유, 우회보유의 경우에도 직접 지분으로 본다.
- √ 제3자를 매개로 한 간접거래도 가능하다.

[공시대상 기업집단]

- 당해 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회사들의 기업 집단 지정 직전 사업 연도의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5조 원 이상인 기업집단(동일인이 자연인이 기업집단에 한정함)
- 지원객체는 특수관계인 또는 특수관계인이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계열회사를 말한다.
- √ 특수관계인은 동일인(총수) 및 그 친족(동일인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3촌 이내의 인척, 동일인이 지배하는 국내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5촌·6촌인 혈족이나 4촌인 인척, 동일인이 「민법」에 따라 인지한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나 생모를 말하며, 동일인관련자로부터 제외된 자는 제외)에 한정한다.

(2) 위법성 판단기준

- '부당한 이익' 인지 여부는 제공주체와 제공객체 및 특수관계인 관계,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의 경위와 그 당시 제공객체가 처한 경제적 상황, 거래의 규모, 특수관계인에게 귀속되는 이익의 규모, 이익제공행위의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변칙적인 부의 이전 등을 통하여 대기업집단의 특수관계인을 중심으로 경제력 집중이 유지·심화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03 내부거래 시 유의사항

- 법 제45조 제1항 제9호의 부당한 지원행위의 경우 별도로 공정거래저해성 요건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과 달리,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는 이익제공행위를 통하여 그 제공객체가 속한 시장에서 경쟁이 제한되거나 경제력이 집중되는 등으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을 것 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2017두63993 판결 등 대법원 판결을 반영한 공정위 지침 변경)

☐ [부당한 이익제공 유형(공정거래법 제47조 제1항)]

유형	내용
<p>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제1호, 제3호)</p>	<p>정상가격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자금, 자산, 상품·용역, 인력거래 또는 특수관계인과의 현금 기타 금융 상품 거래</p> <p>※ 적용 제외</p> <p>① 실제가격과 정상가격과의 차이가 7% 미만이고, ② 거래당사자간 해당연도 거래 총액이 50억 원(상품·용역의 경우에는 200억 원) 미만인 경우</p>
<p>사업기회 제공(제2호)</p>	<p>회사가 직접 또는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회사를 통하여 수행할 경우 회사에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이익성)로서 회사가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할 사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기회(밀접성)를 특수관계인에게 제공하는 행위</p> <p>※ 적용 제외</p> <p>① 회사가 해당 사업기회를 수행할 능력이 없는 경우, ② 사업기회 제공의 정당한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③ 기타 회사가 합리적인 사유로 사업기회를 거부한 경우</p>
<p>합리적 고려·비교 없는 상당 규모의 거래(제4호)</p>	<p>거래상대방 선정 및 계약체결 과정에서 거래 특성상 통상 이루어지거나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는 거래상대방의 적합한 선정과정 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는 행위</p> <p>※ 적용 제외</p> <p>① 거래당사자간 상품·용역 거래총액이 200억 원 미만이고, ② 거래상대방의 직전 3개년도 평균매출의 12% 미만인 경우 ③ 효율성이나, 긴급성, 보안성이 필요한 거래</p>

03 내부거래 시 유의사항

➔ 내용 ①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할값제공 또는 고가 매입)

(1) 대상

-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또는 특수관계인과 현금 기타 금융상품을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함으로써 특수관계인 또는 계열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적용 제외

- 정상가격(시기, 종류, 규모, 기간, 신용상태 등이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조건)과 차이가 7% 미만이고 거래당사자 사이 연간 총거래금액이 50억 원(상품·용역의 경우에는 20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상당히 유리한 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3) 위반 유형

- 계열회사에 대한 저리자금대여, 저리자금예치, 선급금 명목의 자금제공, 기업어음, 사채 저리인수, 후순위사채 매입, 전환사채인수 및 전환행위로 지원을 하는 경우
- 출자행위 성질을 갖는 신주인수행위를 통해 지원을 하는 경우
- 기업 어음 고가 매입
- 회사채 고가 매입
- 주식 고가 매입
- 부동산 등 기타 자산의 고가 매입
- 지원객체에 대한 매출채권회수를 지연하거나 상각하여 회수불가능 채권으로 처리한 경우
- 외상매출금, 용역대금을 약정기한 내에 회수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하여 회수하면서 이에 대한 지연 이자를 받지 아니한 경우
- 지원객체가 생산·판매하는 상품을 구매하는 임직원에게 구매대금을 대여하거나 용자금을 알선해 주고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직원 소속 계열회사의 자금으로 부담한 경우
- 지원객체가 운영하는 광고매체에 정상광고단가보다 높은 단가로 광고를 게재하는 방법으로 광고비를 과다 지급하는 경우
- 업무지원을 위해 인력을 제공한 후 인건비는 지원주체가 부담하는 경우
- 인력파견계약을 체결하고 인력을 제공하면서 퇴직충당금 등 인건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회수한 경우

03 내부거래 시 유의사항

➔ 내용 ② 사업기회의 제공

(1) 대상

- 회사가 직접 또는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회사를 통해 수행할 경우 회사에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특수관계인 또는 계열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를 말한다.
- 이 행위 유형은 외형적으로 사업기회 제공의 상대방에게 경제상 이익이 실제로 이전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판단될 수 있는 제공주체 측면의 요건으로 구성되어 있다.

(2) 사업기회의 의미

- 제공주체 측면에서 회사가 직접 또는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회사를 통하여 수행할 경우 회사에 상당한 이익(이익성)이 될 사업기회를 말하며, 제공주체 측면에서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이면 충분하고 제공객체에게 그 이익이 이전될 필요는 없다.
- 상법 제397조의2에 정한 '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 금지' 규정에서 사용된 표현과 유사하지만, 동법에서는 위반한 이사에 대해 책임을 묻는 규정이고 이사회 승인을 얻으면 원칙적으로 이사의 책임이 면제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3) 위반 유형

-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
 - √ 사업기회 제공 당시에는 이익을 내지 못하는 영업권도 사후적으로 많은 영업이익을 낼 것이라는 합리적 예측이 가능한 경우는 포함한다.
- 현재 수행하고 있는 사업기회
 - √ 회사가 사업 개시를 결정하고 이를 위해 설비 투자 등 준비행위를 하고 있는 사업을 포함한다.
- 수행할 사업
 - √ 내부적 검토 내지는 내부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진 사업을 포함한다.
-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
 - √ 본래 사업과의 유사성, 본래 사업 수행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연관되는 사업인지, 전·후방으로 연관관계에 있는지 등을 고려한다.

03 내부거래 시 유의사항

(4) 적용 제외

- 회사가 해당 사업기회를 수행할 능력이 없는 경우(구체적으로 법률적 불능 또는 경제적 불능이 있는 경우를 의미)
- 회사가 사업기회 제공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당해 사업기회가 지니는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판단)
- 회사가 합리적인 사유로 사업기회를 거부한 경우(사업기회의 가치와 사업기회를 수행함에 따른 경제적 비용 등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를 거쳐 사업기회를 거부한 경우)

➔ 내용 ③ 합리적 고려나 비교 없는 상당한 규모의 거래

(1) 대상

- 사업능력, 재무상태, 신용도, 기술력, 품질, 가격, 거래규모, 거래시기 또는 거래조건 등 당해 거래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조사하고, 이를 객관적·합리적으로 검토하거나 다른 사업자와 비교·평가하는 등 당해 거래의 특성상 통상적으로 행하여지거나 행하여 질 것으로 기대되는 거래상대방의 적합한 선정과정 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함으로써 특수관계인 또는 계열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를 말한다.
- 거래대상 특성상 지원객체(총수일가)에게 거래물량으로 인한 규모의 경제 등으로 비용절감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 비용절감효과가 계열회사에게 과도하게 귀속되는 경우이거나 또는 지원 주체와 지원객체 간의 거래물량만으로 지원객체의 사업개시 또는 사업유지를 위한 최소의 물량을 초과할 정도의 거래규모가 확보되는 등 지원객체의 사업위험이 제거되는 경우에는 상당한 규모의 거래를 통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가 될 수 있다.

(2) 적용제외

- 거래당사자 간 상품·용역의 연간 거래총액(2이상의 회사가 동일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는 경우에 각 회사의 거래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이 거래상대방의 평균매출액의 12% 미만이고 20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상당한 규모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 효율성, 보안성, 긴급성 등의 이유로 불가피한 경우에도 적용이 제외된다.

① 효율성 증대효과가 있는 거래

- ✓ 비용절감 또는 판매량 증가나 품질개선·기술개발 등의 효율성 증대효과가 있음이 명백히 인정되는 거래를 말한다.

- (a) 상품의 규격·품질 등 기술적 특성상 전후방 연관관계에 있는 계열회사 간의 거래로 해당 상품의 생산에 필요한 부품·소재 등을 공급 또는 구매하는 경우에는 생산하는 제품의 품질, 경쟁력이 부품이나 소재, 기초서비스를 제공하는 계열회사의 품질 혹은 경쟁력과 결합되어 평가되기 때문에 계열회사에 일감을 맡기는 것이 효율성 증대효과가 있는 거래로 인정될 수 있다.

03 내부거래 시 유의사항

- (b) 회사의 기획·생산·판매 과정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서비스를 산업연관성이 높은 계열회사로부터 공급받는 경우에는 단일 상품거래가 아닌 유기적이고 통합적인 서비스가 필요한 거래라고 할 수 있으므로 계열회사와의 거래에 효율성 증대효과가 인정될 수 있다.
- (c) 회사가 주된 사업영역에 대한 역량 집중, 구조조정 등을 위하여 일부 사업을 전문화 계열회사에 전담시키고 그 계열회사와 거래하는 경우에는 기업의 구조조정이나 전문성 제고를 위해 기존의 사업부가 분사되어 계열회사가 된 것이므로 효율성 증대효과가 인정될 수 있다.
- (d) 긴밀하고 유기적인 거래관계가 오랜 기간 지속되어 노하우 축적, 업무 이해도 및 숙련도 향상 등 인적, 물적으로 협업체계가 이미 구축되어 있는 경우에는 업무시스템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상호 거래 시 종합적인 시너지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계열회사와의 거래에 효율성 증대 효과가 있다고 인정될 수 있다.
- (e) 거래목적상 거래에 필요한 전문 지식 및 인력 보유, 대규모 또는 연속적 사업의 일부로서 밀접한 연관성 또는 계약이행에 대한 신뢰성 등을 고려하여 계열회사와 거래하는 경우에는 거래상대방 변경 시 과도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거나 품질의 안전성 확보가 보장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계열회사와의 거래에 효율성 증대효과가 인정될 수 있다.

② 보안성이 요구되는 거래

- ✓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 또는 정보 등이 유출되어 경제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거래를 말한다.
- (a)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공장·연구개발시설·통신기반시설 등 필수시설의 구축·운영, 핵심기술의 연구·개발·보유 등과 관련된 경우에는 보안기술 및 정보가 상품 또는 용역의 경쟁력 확보에 핵심적인 부분이므로 계열회사와의 거래에 보안성을 인정할 수 있다.
- (b) 거래 과정에서 영업·판매·구매 등과 관련된 기밀 또는 고객의 개인정보 등 상호간의 핵심적인 경영정보에 접근 가능한 경우에는 다른 자와 거래할 경우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 또는 정보 등이 유출되어 상당한 피해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보안성이 있는 거래라 할 수 있다.

③ 긴급성이 요구되는 거래

- ✓ 경기 급변, 금융위기, 천재지변 등 회사 외적 요인으로 인한 긴급한 사업상 필요에 의해 불가피한 거래를 말한다.
- (a) 긴급성 사유를 인정함에 있어서는 효율성 증대효과나 보안성 사유를 판단할 때보다 더욱 엄격하고 제한적으로만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 (b) 따라서 경기 급변이나 금융위기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단순한 정치·사회적 변동이나 천재지변이 아닌 단순한 자연재해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긴급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 (c) 단순히 긴급한 사업상의 필요에 의해서는 긴급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03 내부거래 시 유의사항

(3) 특수관계인에 대한 이익 공여

- 통상적이고 적합한 거래상대방 선정과정 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할 경우 정상가격 거래도 문제될 수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 공정위가 '상당히 유리한 조건' 및 '부당성'을 입증하여야 한다.

(4) 합리적 고려, 비교에 대한 세부기준 제시

- 시장조사 등을 통해 시장 참여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
- 주요 시장 참여자로부터 제안서를 받는 등 거래조건을 비교할 것
- 합리적 사유에 따라 거래상대방을 선정할 것
- 실질적인 경쟁입찰을 거친 경우에는 합리적 고려와 비교가 있었던 것으로 간주

[예외 사항]

다만, 형식적으로는 입찰절차를 거쳤지만 애초에 특정 계열회사만 충족할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한 경우, 시장참여자들에게 입찰과 관련된 정보를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경우, 낙찰자 선정사유가 불합리한 경우 등 실질적으로 경쟁입찰로 볼 수 없는 경우 제외됨

4. | 업무 시 유의 사항

➔ 계열사 선정 시

- **계열회사와 비계열사와의 가격 및 거래 조건 등의 비교**
 - ✓ 사업능력, 재무상태, 신용도, 기술력, 품질, 가격 또는 거래조건 등을 비교·검토
 - ✓ 위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재무제표, 신용평가표, 업무실적, 가격비교자료 등)를 구비·보관
- **통행세 해당여부 검토(특히 계열사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경우 주의)**
 - ✓ 중간 매개자인 계열사의 전문적 역할, 당사의 거래비용 절감, 당사의 규모의 경제 달성 등 구체적 역할 관련 증빙자료 구비
 - ✓ 계열사가 중간에 개입하지 않을 경우(직거래시) 당사는 더 싸게 상품·용역을 구입할 수 있었는지 확인
 - ✓ 계열사의 매개 전후의 거래관계 변동 확인
 - ✓ 비계열사에는 더 낮은 대금을 지급하는지 여부 확인
- **안전지대에 해당할 경우 위법성 가능성이 비교적 낮으나, 컴플라이언스 부서의 사전 검토 필요**

03 내부거래 시 유의사항

[정상가격 산정 시 유의사항]

- '정상가격'이란 해당 거래와 시기, 종류, 규모, 기간, 신용상태 등이 동일한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자 간에 형성되었을 거래가격을 의미{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이하 '심사지침') Ⅱ.5.Ⅲ.2.}
- 해당거래와 동일한 사례를 찾을 수 없다면 유사한 사례를 통해 정상가격 산정
 - ① 해당거래와 유사한 사례 선정
 - ② 유사 사례와 해당 거래 사이에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래조건 차이 등이 존재 하는지 확인
 - ③ 거래조건 차이가 있다면 합리적인 조정 과정을 거쳐 정상가격 산정
- 유사한 사례도 없다면 통상의 거래당사자가 당시의 일반적인 경제·경영 사정하에서 보편적으로 선택하였을 현실적인 가격으로 산정하되, 다음 법령에서 고려하는 방법을 참고 할 수 있음(공정위는 이러한 가격 산정 방법을 걸친 것만으로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것은 아님)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조(정상가격의 산출방법) 및 동법 시행령 제2장 제1절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한 과세조정) 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장(재산의 평가) 및 동법 시행령 제4장
- 정상가격에 대한 입증책임은 공정위에 있음(2014두36112판결), '정상가격'이 이러한 합리적으로 산출되었음에 대한 증명책임은 시정명령 등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공정위에 있음.

➔ 가격 선정 시

- 비계열사와의 가격 비교를 통해 합리적 가격을 설정하여야 한다.
- ✓ 비계열사와의 가격비교자료, 감정평가자료 등 정상 가격에 관한 검토자료를 구비·보관 하여야 한다.
- ✓ 실제 거래가격과 정상가격의 차이가 7% 미만이 되도록 조정하여야 한다.

➔ 기타 거래조건 설정 시

- 계약방식 및 내용에 대한 자체 검토 필요
- 회계법인, 감정평가 등 제3자를 통한 계약 조건 검토
- 거래조건을 비계열사와 거래 시 설정하는 수준으로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 거래조건 협상과 관련한 근거자료(회의록, 전자메일 등)를 구비·보관하여야 한다.

04 Q&A

Q. 다른 사업자와 거래하면서 적자에 허덕이는 계열회사를 지원하기 위해 다른 사업자와 거래 시 특별한 역할이 없는 해당 계열회사를 거래 중간단계에 포함 시켜도 공정거래 법상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

A. 다른 사업자와 직접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상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를 거래단계에 추가하여 거래하면서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금지하는 부당 지원행위 중 '통행세 지원행위'에 해당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

Q. 거래종료 당연사유가 아닌 회사 내 정책적인 사유로 인하여 특정 수급사업자와 거래를 중단하고자 할 경우 어떤 절차를 갖춰야 하는지?

A. 회사의 사정으로 불가피하게 거래를 중단하고자 할 경우 거래상대방이 다른 거래처를 물색하는데 필요한 만큼의 기간을 부여해야 함

Q. 물품을 구입하면서 비계열회사인 A사가 계열회사인 B사보다 견적가격을 싸게 제시하였음에도 B사와 거래하기로 하였다면 법 위반인가?

A. A사가 공급하는 물품이 가격에 비해 품질이 떨어지거나 불량률이 높은 등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된다면 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단,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취급이 될 수 있음

Q. 구입강제 행위는 거래상대방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 경우 상품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인데 여기서 '구입할 의사가 없는 경우'란 어떤 것인가?

- A. '구입할 의사가 없는 경우'로 입증된 사례는 다음과 같음
- ① 거래상대방의 주문이 없는데도 회사의 재고량 해소를 위해 일방적으로 공급하면서 반품을 불허하는 경우
 - ② 거래상대방의 영업과 무관한 제품을 필요 이상으로 구입하게 하는 경우
 - ③ 신제품을 거래상대방의 의사를 불문하고 대량 공급하고 반품을 불허하는 경우
 - ④ 거래상대방이 자재의 구입을 요청한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없고 전국 어느 지역에서 용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자재의 별도의 운송비까지 지급하면서 구입한 경우

Q. 제조업체가 대리점과 계약 시 계약서상에 판매 및 영업지역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는 것이 법위반이 되는지?

A. 사업자가 상품 또는 용역을 거래함에 있어서 그 거래상대방의 거래지역 또는 거래 상대방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는 거래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로서 구속조건부 거래행위에 해당됨

단, 지역 외 판매에 대해 제재를 가하지 않는 특정지역에 대한 판매책임제, 판매거점제 등은 공정거래법상 문제가 되지 않음

Q. 대리점에게 판매지역을 일정한 지역으로 지정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문제가 되는가?

A. 지역제한의 경우 구속성의 정도에 따라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 즉, 지역 구속성이 약한 단순한 구속성이 약한 단순한 지역책임제나 판매거점제는 원칙적으로 허용됨. (제조업자가 판매점에 대해 일정한 지역을 주된 판매지역으로 설정할 뿐 지역 외의 판매도 허용되는 경우)

그러나 지역구속성이 강한 지역제한은 문제가 됨. 예컨대 해당제품의 시장이 독과점 상태에 있고 지역 제한이 이를 심화시키는 효과가 있으며 지역제한을 어겼을 때 공급중단, 계약해지 등 제재수단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됨

Q. 제조업자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면서 자기의 상호를 부착한 대리점에 대하여 자사 제품을 취급하도록 하는 것은 문제가 되는가?

A. 자사 상호를 부착한 대리점에 대하여 자사 제품만을 취급하도록 한 것은 부당한 거래 제한에 해당되지 않음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01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개요

1. | CP의 정의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Compliance Program)란, 기업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서 스스로 구축하고 운영하는 교육, 감독 등의 내부준법시스템으로, 임직원에게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에 관한 행동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행위의 예방 및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일련의 규범이자, 시스템

2. | CP도입의 중요성 및 도입 요건



➔ CP도입의 중요성

- 공정위 조사·제재에 따른 금전적 부담 예방 : 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손해배상 등 경제적 부담 예방
- 법 위반으로 인한 기업이미지 실추 방지 : 법 위반 사실 보도 등으로 인한 사회 이미지 실추 예방
- ESG평가 지표 반영 : 공정거래 CP 적극 활용으로 ESG경영 강화
- 임직원 법규 이해도 제고, 공정거래 문화 조성·확산 : 임직원 스스로 법 위반 예방을 통한 공정거래 인식 향상

01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개요

➔ CP도입 8대 요건

1. CP기준과 절차 마련 및 시행

- 업무와 관련된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 및 실천을 위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시행

2. 최고경영자의 자율준수 의지 및 지원

- 최고 경영자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의지와 방침을 공개적으로 표명하고 CP운영 적극 지원

3. CP담당 자율준수관리자 임명

- 이사회 등 최고 의사결정기구는 자율준수관리자를 임명하고, CP운영에 대한 책임 부여

4. 자율준수편람의 제작, 활용

- 자율준수관리자 책임하 공정거래 관련 법규, CP기준 및 절차를 포함하여 작성하고, 모든 임직원이 쉽게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제작

5. 지속, 체계적 교육 실시

- CP기준과 절차, 관련 법규 준수사항을 임직원에게 효과적, 정기적인 교육 실시

6. 내부 감시 체계 구축

- 법 위반 예방을 위해 감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용

7. 법 위반에 대한 제재

- 법 위반 책임이 있는 임직원에 대하여 제재조치를 규정한 사규를 마련·운용하고, 법 위반 행위 발견 시 적극 대응 및 재발 방지

8. 효과성 평가와 개선 조치

- 효과적 CP운영을 위한 정기적인 CP기준, 절차 운용 등의 점검 평가와 개선조치 실시

02 CP등급평가

1. | CP등급평가 정의 및 목적

→ CP등급평가란

- CP 8대 도입 요건을 갖추고, CP를 운영한지 1년 이상 경과한 기업 중 평가를 신청한 기업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CP운영실적 등을 기준으로 기업별 등급을 산정하는 제도

→ CP등급평가 목적

- CP운영 기업을 대상으로 일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등급을 부여함으로써 우수한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충실한 CP운영을 유도 및 기업의 공정거래 역량 강화 목적

2. | CP등급평가 인센티브

→ CP등급평가 인센티브 법제화

공정거래법 제 120조의 2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의 확산)

-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를 받은 사업자를 대상으로 그 평가 결과 등에 근거하여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감경이나 포상 또는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 CP등급평가 인센티브 상세내용

CP평가등급	과징금감경	직권조사면제	시정명령 공표
최우수(AAA)	15%	2년	공표크기 및 매체수 2단계 하향 조정, 공표기간 단축
우수(AA)	10%	1년 6개월	공표크기 및 매체수 1단계 하향 조정, 공표기간 단축
비교적 우수(A)	-	-	-

※ 비교적 우수(A)보다 하위 점수는 등급 미부여

03 포스코와이드 CP추진경과

1. | CP추진 경과

회사는 2008년 8월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더욱 투명한 공정거래 기반을 구축한 이래로 현재까지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 조성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08 ~ 現

- '08.08 CP도입 선언, 운영지침 제정
- '08.12 자율준수관리자(이상필 경영지원본부장) 이사회 선임, 공정거래 자율준수 편람 발간(1차)
- '09.08 자율준수편람 개정 발간(2차) * 하도급법 개정 내용 추가
- '10.03 CP전담부서(정도경영팀) 신설, 자율준수관리자(김진욱 경영지원본부장) 이사회 선임
- '10.07 CP등급평가 참여(AA획득) * 중소기업 기준
- '11.10 자율준수편람 개정 발간(4차) * 공정거래 구매·판매부문 사례집
- '11.12 자율준수편람 개정 발간(5차) * 하도급 부문 보충
- '12.07 CP등급평가 참여(AA획득) * 중소기업 기준
- '13.03 자율준수관리자(안윤 상임감사) 이사회 선임
- '14.07 포스코그룹 통합 자율준수편람 발간 * 집필진 회사로 참여('12, '14년 총 2회 참여)
- '16.03 자율준수관리자(김주현 상임감사) 이사회 선임
- '18.03 자율준수관리자(이상걸 상임감사) 이사회 선임
- '19.01 수의계약 사전감사제도 도입
- '21.03 자율준수관리자(강윤평 상임감사) 이사회 선임
- '22.12 자율준수편람 개정 발간(6차)
- '23.08 하도급 상생협력 위원회(분쟁조정기구) 신설
- '23.12 CP등급평가 우수(AA) 획득 * 대기업 기준
- '24.03 자율준수관리자(황경호 정도경영실장) 이사회 선임
- '24.03 포스코그룹 CP활성화 TF 참여('24.03 ~ 11) * 그룹사 SNNC 지원
- '24.10 CP운영지침 개정(자율준수관리자 직무 강화, 교육프로그램 개선 등 CP업무 구체화)
- '24.10 회사 홈페이지 내 공정거래 분야 개선
- '25.01 자율준수편람 개정 발간(7차)
- '25.04 자율준수관리자(안병도 상무보) 이사회 선임
- '25.12 CP등급평가 비교적 우수(A) 획득 * 대기업 기준
- '26.03 자율준수관리자(이평수 상부보) 이사회 선임
- '26.05 자율준수편람 개정 발간(8차) * '26년 1차 개정

POSCO

포스코와이드

www.poscowide.com